

유의사항

- 사업주가 2022. 9. 1.~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(구조조정 등)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
- 단,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가능,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서류로 고용보험상실 사유 확인
-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 이후 경진원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, 검토 후 기업에 일괄 지급  
-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: 계속 고용 3개월 경과 후 20일 이내  
-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(현금 지급 불인정)
-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3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 퇴사 한 경우 퇴사일(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)까지 지원금 일괄 계산  
- 단,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괄 계산 지급  
-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 퇴사는 지원 불가  
-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괄 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 
-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,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함.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
-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
-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
- 기타  
-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,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
-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
- 현장 접수 대상 업체에 30% 예산 우선배정(9월 한시, 미소진 시 예산 통합운영)

문의처

 **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**

**062-960-2631, 2638**

광주광역시와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필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 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 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어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. ☎ 062-613-3722

#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

#소상공인 #응원합니다



## 지원내용

### 지원기간

2022. 9. ~ 12. (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)

### 지원사항

- 인건비 지원 :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, 최대 3개월 지원
- 지원인원 : 1개 업체당 2명 이내

### 지원조건

- 2022. 9. 1. 이후 신규 채용자
- 근로시간 :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
-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,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
- ※ 사업주 임금체불,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, 최저임금 미만 지급, 4대 사회보험 미가입,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

## 신청자격

### 소상공인

-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\*5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\*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로 확인(2022.9.1.~신청일)
- 사업공고일(2022.9.1)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
- 지원제외 업종 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
### 근로자

-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(주민등록상)
- 만 19세 이상~ 만 60세 미만 미취업자 ※ 연령 기준일 : 공고일 현재(2022.9.1.)
- 2022. 9. 1. 이후 고용된 근로자

###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자




-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
- ②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,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(2022년 광주광역시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포함)
-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④ 참여 신청일 현재 재학생
  - 단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, 대학·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

## 신청방법

### 신청기간

2022. 9. 5. ~ 12. 31. ※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### 접수방법

- 온 라인 신청  <https://jk.gepa.or.kr>
- 현장지원 신청  062-960-2688  ID:jikimigj

## 제출서류

구분	신청주기	제출서류
 신규채용 지원신청	최초 1회	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신청서 [서식 1]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(대표자, 근로자) [서식 2] ③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(체크리스트) [서식 3] ④ 근로계약서 사본 [서식 4]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⑥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(2022.9.1~신청일) / 상시근로자 수 확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분) / 신규 채용자 보험가입 확인 ⑨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발급분) ⑩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(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분) ※ ①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작성 제출 ②~⑩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
 인건비 지급신청	계속고용 3개월 후	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급신청서 [서식 5] ② 급여대장(3개월분) ③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(3개월분)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신청일 발급분) /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발급분) ⑥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※ ①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작성 제출 ②~⑥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

※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
-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크 처리 후 제출 (이름은 전체 공개)

## 지원절차

1.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(근로자 채용 후)  
사업주 → 경진원
2.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 
경진원
3. 적격여부 승인, 통보  
경진원 → 사업주
4. 고용유지, 급여지급  
고용유지 후 매달 급여지급  
사업주 → 근로자
5. 지원금(인건비) 지급 신청 (계속고용 3개월 후)  
사업주 → 경진원
6. 지원금(인건비) 지급  
경진원 → 사업주

※ 광주경제고용진흥원(이하 경진원)